

##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연말정산 안내

1. 교육비 납부내역은 매년 국세청의 교육비 소득공제 기준을 준수하여 학교에서 국세청으로 발송합니다.
2. 교육비 내역은 홈텍스([hometax.go.kr](http://hometax.go.kr))에서 학생, 학부모(자료제공 동의 시)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아래에서 자료제공동의 방법 및 출력방법 안내)
3. 2번과 같은 이유로 학교에서는 교육비 소득공제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4.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는 매년하셔야 합니다. 당해 연말정산 후 초기화됩니다.
5. 학자금대출금액은 교육비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학자금대출을 상환한 연도에 상환한 만큼 소득공제(2016년 이후 개정)

# 교육비 소득공제 자료 출력방법 안내

## 1. 홈텍스 접속(hometax.go.kr) 후 조회/발급 클릭



1-(2) 연말정산 시준일 경우 아래 화면이 보일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제자료 조회/발급 클릭(2번 안내 건너뛰고 3번 안내로 이동)



## 2.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HOME **My NTS**
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인증센터 모의계산 공익법인공시 법령정보 부서사용자 가입하기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조회/발급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고된 내용의 조회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신고분의 전산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 납부된 내용의 조회는 최근 5년 이내의 납부 내용으로 은행 납부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소득자료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회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송출차 가액조회
- 현지경수할구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XML원본보기

- 발급
- 목록조회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사용자유형별 조회권한 관리
- 주민번호 수취분전환및조회
- 발급보류/예정목록조회
- 거러쳐 및 품목관리
- 메일발송목록 조회 및 재발송
- 수신전용메일 신청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알려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연장됩니다.)  
 발급 및 전송기한 안내보기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 현금영수증 수정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사업용 신용카드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입동의
- 나의신고대리수입동의
- 나의세무대리인조회
- 발급된 증명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 신고대리 정보이력 조회

#### 세금 신고 납부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상속 증여재산 평가하기
- 세금신고결과조회
- 부가세예정고지 세액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 납부내역 조회
- 타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조회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정보조회

####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 과세유형전환
- 사업용계좌신고현황
- 주류면허상태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 불복청구진행상황
- 불복청구사전열람자료
- 위원회의자료
- 과세자료조회
- 지급보증 정상가격 조회
- 현금금 상세조회
- 납세관리인 위임자 조회
- 반송된 우편고지서 내역
- 서면(방문, 우편등) 접수현황조회

**QUICK**

바로가기  
환경 설정

접기 ^

### 3. 자료제공동의(성인자녀는 자녀의 공인인증서 또는 자녀의 휴대폰인증 필요)

- 성인자녀(~1999년 출생자까지) :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클릭

- 만 19세 미만자녀(2000년 출생자~) : 미성년자녀의 경우 클릭

※ 동의 후 진행상황을 조회하여 완료된 후 4번부터 진행

※ 인증절차 문제의 경우 국세청 문의바람.(국번없이 126)

The screenshot shows the '연말정산간소화' (Simplified Year-End Tax Settlement) page on the Home Tax website. The page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 (Simplified Year-End Tax Settlement Usage Time):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매일 08: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08: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08:00~24:00 (12월 중)
-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Consent to Provide Information Application Method):
  -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Consent to Provide Information Application Method):
  - 자료제공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경우:
    -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필요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녀의 경우:
    -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자료제공자의 인종이 관련된 경우 ⇒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Simplified Year-End Tax Settlement Service Usage Procedure):
  -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은행, 우체국 등 발급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 간소화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 조회)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바로가기](#)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 회사 제출 (회사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근로자) 자료 조회** (Employee Data Retrieval):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사업자)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 (자료제공동의)** (Consent to Provide Information):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녀의 경우
  -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 (자료제출기관)** (Data Submission Agency)
- (원천징수무무자)** (Source Deduction Exempt)

#### 4. 교육비공제 서류 발급

- 자료제공동의 완료 후 진행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클릭

**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절차**

- 01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은행, 우체국 등 발급
- 0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
- 03 간소화 자료 조회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바로가기](#)
- 0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 05 회사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매일 08: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 08: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신청 : 08:00~24:00 (12월 중)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	·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용 필요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a href="#">바로가기</a>
미성년자녀의 경우	·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 가능 ·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 가능	<a href="#">바로가기</a>

○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곤란한 경우 ⇒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온라인신청	·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를 대변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필요	<a href="#">바로가기</a>
팩스 신청	· 신청서에 자료제공자와 자료조회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팩스로 전송	<a href="#">바로가기</a>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세무서 신청안내

**(근로자)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사업자)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 조회되지 않는 의뢰비 신고센터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본인인증이 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녀의 경우
-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자료제출기관)**

**(원천징수의무자)**

## 5. 자료 확인 및 출력

- 교육비 항목 클릭 후 금액 적용 확인(제공 미동의시 금액이 확인되지 않음.)
- 납부한 등록금 중 장학금, 학자금대출을 받은 금액은 제외됨.
- ex) 300만원 납부 후 장학금 200만원 수혜 시 교육비 납입은 100만원.
-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시 교육비 납입은 0원.
- pdf다운로드 후 출력 또는 인쇄하기로 바로 출력
- 납부금액이 다를 시 053-560-3711 문의(점심시간12~1시)

☰ 비회원전용
(근로자) 공제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조회/발급
7 사업자등록증명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원함

귀속년도 2017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의료비신고
영수증발급기관조회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미연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안내

본 서비스는 의료기관, 금융기관 등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세액공제 대상, 공제한 도액 등의 공제요건은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확인 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요건 위반, 부양가족 중복공제 (근로자 2인 이상이 동일인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는 경우), 자녀양육비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 무단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 납부 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조회 및 출력 절차

**step 1. 적용일 선택**    귀속년도 2015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step 2.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 클릭**

**step 3. 내용확인** (선택하지 않을 자료는 선택해제)

**step 4. 공제신고서 작성** (선택된 본인 및 부양가족의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 세액 지도개산, 맞벌이 부부 질세 안내), **출력 및 다운로드**

**step 5. 회사에 제출** (출력물 PDF, 온라인 제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한번에 내려받기
한번에 인쇄하기
제공동의원함

귀속년도 2017년
전체선택
선택해제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의료비신고
영수증발급기관조회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보험료 (Insurance)	의료비 (Medical Expenses)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신용카드 (Credit Card)	직불카드 (Debit Card)
현금영수증 (Cash Receipt)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Pension Savings)	주택자금 (Housing Funds)	주택미연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Long-term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vings)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Membership Fee For Small Size Enterprises)	기부금 (Donation)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비 기본내역
PDF다운로드
인쇄하기
교육비 안내

교육비 (대학원 본인공제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생	교육비종류	상호	교육비세부항목	지출금액계	인법합계
-------------------------------------	----	-------	----	---------	-------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교육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미제출한 경우 적금 증명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조회 가능합니다.)